

電氣關係 諸法規 相互補完에 關하여

A Study on Mutually Related Matters
in Electric Laws and Regulations

(3)

林 大 喆

前 大田工業專門大學 教授 兼 學監

5. 技術者의 教育에 관한 考察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모든 有資格技術者는 5년에 한번씩 教育을 받게 되어 있고, 또 各各의 法에 의하여 一定期間마다 補修教育을 받게 되어 있다.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教育은 每年 冬節期 즉 工事가 거의 없는 時期를 택하여 教育함으로써 業體 및 被教育者의 便宜를 도모하고 있다. 그 教育을 正當한 事由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그에 대한 施工管理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令 第18條). 이에 비하여 電氣事業法에 의한 教育은 2年마다 1회씩 받게 規定되고(規則 第51條), 그 教育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業主가 해임하게 되어 있다(法 第42條). 그러므로 이 法을 惡用하면 4년에 1회만 教育을 받으면 그를 制裁할 도리는 없다. 法 第42條는 2회 이상이라는 字句를 빼고 “正當한 事由없이 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고 改正하는 것이 電氣工事業法과 均衡을 이루게 될 것이다.

電氣工事技術者는 그가 專任職이므로 工事協會 主管의 教育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自家用電

氣工作物의 保安擔當者는 電氣事業法에 의한 教育 이외에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管理者로서의 教育,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安全管理者로서의 教育, 消防法에 의한 防火管理者로서의 教育을 받아야 한다. 各協會別로의 教育科目을 살펴보면 표9와 같다. 이 중에서 電氣保安擔當者와 에너지管理者의 教育內容에는 共通된 것이 많다.

教育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理論은 成立되거나 同一人에게 대하여 거의 같은 教育이 반복된다는 것은 教育을 받는 本人도 번거롭고, 企業主側에서 보면 教育回數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教育을 委託받은 機關 또는 協會는 教育計劃을 每年初에 主務官署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教育의 時期와 教育課程을 調整하거나 또는 동일한 教育은 어느 한쪽에서 받은 경우 다른 機關의 것은 免除되는 制度가 要望된다.

위에서 설명한 教育의 時期와 教育內容 또는 重複되는 科目의 免除 등을 調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根據法이 다르고 主務官廳이 各各 다르기 때문에 調整의 主役이

〈표 9〉 各協會主管의 教育科目

() 내는 교육대상자

大韓電氣協會 (電氣保安擔當者)	韓國電氣工事協會 (電氣工事技術者)	大韓産業安全協會 (安全管理者)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者)
1. 정신교육 2. 電氣事業法解說 3. 電氣供給規程解說 4. 電力電子工學 5. 工場自動化에 있어 P. C.의 役割 6. 電動力設備의 損失低減法과 케 크리스트 7. 效率인 電氣管理(照明을 中心으로) 8. 受電設備의 維持 및 補修 9. 節電型換資材 소개	1. 工場設備의 自動化 2. 配電設計의 現代化 3. 使用前檢査에 대한 施工管理 4. 産災保險法解說 5. 災害豫防 6. 電氣設備技術基準令 및 關係規程解說 7. 電力設備 概要 및 電氣工事業法解說 8. 地中電線路 9. 하이테크 施工技術	1. 産業安全保健法解說 2. 安全管理 3. 機械安全 4. 電氣安全 5. 化工安全	1. 政策方向 및 公團業務 소개 2. 受·變電設備의 에너지 節約 3. 電動力設備의 에너지 節約 4. 照明節電技法 5. 電力設備 診斷 6. 斷熱施工法 7. 自動制御 利用技術 8. 法規解說 9. 國民精神 教育 10. 質疑·討論 및 設問

없다. 여기서 電氣事業法에 의한 保安擔當者의 教育方法을 다음과 같이 改善하는 것이 效果的이라 생각된다. 즉, 現在는 外部講師를 초빙하여 教材에 따라 教育하고 있으나 이를 會員의 事例研究制度로 바꾸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5年마다 實施하는 教育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資格更新의 再教育이라 할 수 있으나 電氣事業法에 의한 2年마다의 教育은 補修教育 또는 實務教育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教育을 받으면 곧 職場에서 活用되어야 한다.

事例中心의 教育을 하자면 그 課題와 發表者는 6個月 내지 1年前에 決定되어야 하며, 그 課題는 保安의 職務組織, 安全管理事例, 機器操作問題, 機器의 壽命延長事例, 機資材活用事例, 電力使用合理化事例 등 수 많은 課題가 제기될

수 있다. 現行教育制度는 被教育者가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事例教育은 하나하나가 새로운 것이고, 그 중에서 좋은 점은 곧바로 本人의 職務에 活用되므로 그 效果는 매우 큰 것이다. 또한 事例發表는 技術向上 또는 原價節減의 目的外에 그 事業場의 弘報를 兼하게 되므로 所要經費는 發表者가 속하는 企業體에서 負擔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종합적인 改善策

가. 法改正에 의한 改善方法

1986年末 現在 販賣電力電 56,310GWh인데 대하여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1년에는 그의 2.7배가 넘는 155,924GWh로 豫想되는 바 그에 對處하여 現行政體制를 民間主導로 轉換하여야 한다. 그것의 概要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電氣工事業法

現行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第34條의 第2項에 의하면 第1種工事業의 免許記載事項의 變更申告, 受給限度額의 策定, 電氣技術者의 補修教育만 協會에 委託되고, 第2種工事業에 대하여는 各市·道知事에게 委任되고 있다. 施行令 第34條를 改正하여 政府의 모든 行政을 協會에 委託하고, 協會는 委託받은 일을 處理함과 아울러 月 1회씩 各市道 및 主務官廳에 處理事項을 報告하게 한다. 즉, 官廳은 協會의 報告에 의하여 工事業에 관한 모든 事項을 파악하고 定期的 및 隨時로 協會를 監査하면 된다. 工事業에 관한 모든 것을 協會에 委託하였다 하여도 法第33條에 있는 報告 및 檢査의 權限은 政府에 있게 되므로 계속 工事業者를 監督할 수 있는 것이다.

(2) 電氣事業法

電氣事業法에 있는 政府의 行政權은 2000年代를 대비하여 關聯民間團體에 委託하고 官廳은 이 단체를 定期的으로 또는 수시로 監督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電氣工事業法과 同一하게 電氣事業法에도 關聯團體의 設立에 관한 條項이 挿入되어야 할 것이다.

나. 地方自治제에 대비한 改善方法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第34條를 보면 政府의 權限中 15個項目이 道知事에게 委任되고, 단 3個項目만이 協會에 委託되고 있다. 電氣事業法 施行令 第22條에 따르면 道知事에게 委任된 것이 23個項目이고, 輸出自由地域管理所長에게 委託한 것이 7個項目인데 비하여 協會에 委託한 것은 施行規則 第51條에 의한 保安擔當者의 教育의 指定 뿐이다. 이와 같이 많은 權限이 道知事에게 委任되고 있는 時點에서 不遠間 地方自治制가 實施되면 그 委任받은 事項을 直接擔當하는 道가 있을 것이고, 下部官廳에 다시 委任하는 道가 있는가 하면 協會나 기타 團體에 委託하는 道도 있을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受任態勢를 갖추지 못한 道知事에게 많은 權限을 一時에 委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일의 處理能力을 完備한 關聯民間단체에 委託하면 簡單히 解決되는 것이다. 또, 法을 改正하는 것은 地方自治가 實施되기 前에 이루어져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단체로서는 韓國電氣工事業協會와 大韓電氣協會가 있으며 각기 分野別로 관련기술의 補給과 指導는 물론 문제점을 발굴, 制度改善에 率先하고 있으며 그 組織 또한 각기 特性에 適應하며, 全國各 地域마다 支部組織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現行 行政기관에서 수행하는 相關業務를 이들 단체에 委任함으로써 政府는 最少의 費用과 少數의 人力으로 行政을 效率化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政策中의 하나가 모든 産業部門을 政府主導에서 民間主導로 轉換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전기관계법령의 모든 行政上의 문제를 이들 團體에 委託할 時機가 到來하였다고 생각한다.

다. 民間단체 및 기관의 機能強化

(1) 韓國電氣工事業協會

社會의 모든 部門이 官廳主導에서 民間主導로 轉換하는 것에 대비하여 協會는 自律能力의 向上에 全力을 기울여야 한다. 電氣工事業의 利害關係에 대한 문제가 發生할 때 發注機關에 대

하여 항의 또는 建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協會自體에서 解決하는 方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一種業體가 二種工事業의 入札에 參加하는 것, 少額의 工事を 地方業體에 주지 아니하고 全國에서 應札하는 문제, 수의계약으로 될 것을 公開入札하여 혼잡을 이루는 문제 등은 法에 關係없이 協會의 理事會 또는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牽制하면 된다.

즉, 少額工事, 예를 들어서 1億원이하의 工事は 道內業體만 參加한다든가, 1千萬원이하의 入札에는 아무도 應札하지 아니한다는 것 등을 總會에서 決議하고 실천하면 된다. 그에 따르지 않는 業體는 會員資格停止 등의 制裁로 解決하면 된다.

다음은 電氣工事業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發展되어 社會奉仕活動도 하고, 또 從業員의 海外研修로 技能向上을 도모하고 있으나 土建業기타의 製造業 등에 비하면 아직도 영세하다는 評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協會는 영세회원업체의 合同을 誘導하여 大型業體로 育成함이 有利할 것이다. 2個業體가 合同하면 2名의 社長中 1名만의 社長으로 되는 不利는 있으나 資本金이 2倍로 되어 受給限度額이 2倍가 될 것이고, 事務員의 人件費 및 營業所의 維持費가 半減되며, 社會的인 信賴性이 向上되는 등 有利한 點이 많을 것이다. 合同을 誘導하자면 政府가 協會에서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준다는 등의 特惠가 주어져야 한다.

工事業의 發展의 한가지는 法的인 免許上의 權利는 同-하다 하여도 都給業과 下都給業體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相互間에 有利하다. 下都給專門으로 하더라도 會社의 선전비용이 必要없고, 應札에 所要되는 經費가 필요없으며, 設計要員 등의 人件費도 들지 아니하는 有利한 點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協會는 下都給業의 育成策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合同 또는 下都給만을 맡는 業體를 늘리어 競爭入札의 應札者數를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政府나 各機關의 1年間의 工事量과 豫算額은 決定되어 있는데 그 競爭이 심하여 豫定

額의 全額이 業體의 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發展을 못하는 것이다. 또, 豫定額의 90% 이하의 落札者는 얼마, 80% 이하의 落札者는 얼마의 違約金을 징수하는 決議도 필요하다. 이것은 協會가 돈이 必要하여서가 아니라 豫定額의 거의 全部를 業體의 손에 들어오게 하는 方法의 하나이다. 간혹 機關에서 工事金額을 過少하게 책정한 경우는 會長 또는 支部長이 會員全員에게 아무도 應札못하게 하는 긴급지시권을 委任하는 總會決議도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이의 實例은 書籍小賣商組合에서 冊을 定價대로 販賣하자는 決議로 過多競爭으로 도산 직전의 書籍商이 好況을 맞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일이 會員의 地位向上과 利益增大의 當面課題라 할 수 있다.

(2) 大韓電氣協會

每年 電氣年鑑을 發行하는 外에 多數의 圖書를 發刊하여 電氣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中에서 內線規程과 配電規程은 團體規格인 것이다. 國家規格보다 團體規格이 우려를 발휘할 경우에 그 나라의 産業은 發展하는 것이다. 國家規格은 統制의 뜻이 있으나 團體規格은 自律性의 성격으로 스스로 정하여 스스로 준수하는 長點이 있다. 그러므로 協會는 하루속히 電氣安全管理規程, 送電設備規程, 變電設備規程, 發電設備規程 등을 制定하여 會員社에 普及시키는 方向으로 일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政府는 電氣事業法과 그 施行令만을 制定하여 그 行政을 全部 關聯協會에 委託함으로써 協會는 그 受託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準備하여야 할 것이다.

政府는 모든 國民에게 關聯되는 刑法, 稅法等 一般法만을 다루고, 電氣事業法, 電氣工事事業法等 特定法の 施行은 가능한 限 關聯民間團體나 協會에 委任, 委託함으로써 特定法 施行에 必要한 諸般 行政費用의 支出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7. 結 論

電氣關係法規의 基本制度上에서 그 運用을 政

府主導에서 民間團體中心으로 轉換하는 것을 가장 力點을 두어 다루었다. 電氣事業의 初創期는 그 設備規模가 적어서 모든 것을 中央의 한 부서에서 統制와 監督을 하였고 또 그것이 可能하였으나 現在와 같이 방대한 電氣設備를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없게 되자 그 權限을 受任態勢가 미흡한 地方自治團體에 大幅的으로 委任하고 있는 실정이다. 不遠間에 地方自治制가 實施되면 그 權限을 直接 擔當하는 道가 있는가 하면 下部官署에 再委任하는 道도 있을 것이고 또 協會 등의 民間團體에 委託하는 道도 있을 것이므로 그 電氣行政을 中央에서 파악하기 힘들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電氣의 特性을 고려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地方自治制가 實施되기 전에 施行令을 改正하여 工事業에 관한 것은 韓國電氣工事協會에, 電氣事業에 관한 것은 大韓電氣協會等에 모든 行政을 委託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電氣事業法에 指定 團體 또는 機關의 設立을 삽입하여 이 民間指定 단체 또는 기관은 電氣事業法上的 團體로 하고, 電氣事業者, 自家用電氣工作物設置者 및 指定調查機關은 法的으로 이 지정기관의 會員이 되도록 하여야 電氣工事事業法, 産業安全保健法, 에너지 利用合理化法 등과의 균형이 맞게 된다.

協會 또는 民間단체에서 早速히 電氣安全管理規程이 制定되어야 한다. 安全에 관한 法規는 産業安全保健法이 主가 되어야 하나 이 法에서 電氣安全에 관한 規定은 韓國電力公社의 安全作業守則의 內容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安全管理規程이 制定되면, 電氣事業法 電氣工事事業法, 産業安全保健法, 에너지 利用合理化法 등에서 電氣에 關한 安全은 “電氣安全管理規程”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 모든 문제가 簡單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協會 또는 民間단체에서는 送電設備規程, 變電設備規程, 發電設備規程을 만들어 電氣事業法 第36條(電氣工作物의 維持)에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을 “指定機關 또는 團體制定 諸規程에 적합하도록”으로 改正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電氣設備技術基準에 關한 規則의 細部事項

을定하는告示事項이 52個事項, 別表 36個, 附表 37個 등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事項이다.

다음은 電氣保安에 관한 現行法規를 보면 電氣工事業法과 電氣事業法에서 上級技術資格者만을 規定하고, 그 下部職員에 대한 資格規定이 전혀 없는 實情이다. 國家技術資格法上에는 技術系와 技能系를 同一하게 社會的으로 우대한다고 規定하면서 電氣關係法規에서는 技能系에 대하여 아무런 施策도 강구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電氣工事に 從事하는 職員과 自家用電氣工作物設置場所의 保安業務에 從事하는 職員은 해당분야의 有資格者만으로 構成케 하고, 그 所有資格種類와 免許番號가 記載된 名簿를 每年末에 監督廳에 提出하도록 規定을 改正하여야 한다.

電氣工事業이 法人의 경우는 任員中 1名이상 이 電氣技術者로 되어 있으나, 業體가 個人의 경우에는 技術者가 고용인으로 되어 있다. 이는 國家技術資格法의 취지에 따라 個人業體는 有資格技術者에 한하여 免許를 부여하여야 한다.

自家用電氣工作物의 保安擔當者는 專任職으로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電氣設備의 運轉責任者格인 保安擔當者가 兼任이나 保安代行으로 될 수 없다는 一般의인 理論上으로도 그러하고, 다른 法의 均衡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와 같은 理論은 製造業의 경우를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고, 契約電力 300kW미만의 自家用 電氣工作物은 一般用電氣工作物과 同一한 아파트, 빌딩, 官廳, 學校 등이 많으므로 兼務나 保安代행을 贊

정적으로 許容하는 것이 좋다. 또, 300kW미만은 現行 施行規則 第47條의 2에 작은 규모의 設備라는 규정에도 맞으므로 이와 같은 方向으로 電氣事業法 施行規則을 改正하여야 한다.

自家用電氣工作物은 2년에 한번씩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現行法에 따르면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의 重要機器는 定期檢査를 받게 되어 있고, 一般用電氣工作物은 2년에 한번씩 調查하게 되어 있다. 이 調查는 명칭은 다르나 하나의 定期檢査이다. 여기서 제외된 것이 自家用 電氣工作物인 고로 自家用電氣工作物도 一定期間마다 檢査를 받는 規定이 必要한 것이다. 定期檢査는 使用前檢査에 合格한 工作物이라 하여도 時日의 經過에 따라 그 劣化된 程度를 點檢하는 것이므로 自家用電氣工作物이라 하여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自家用電氣工作物의 定期檢査制를 導入함으로써 指定調查機關의 保安代行要員은 그 裝備와 더불어 定期檢査員으로 委任을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은 方向으로 法이 改正 施行됨으로써 電力會社는 電力供給에만, 指定調查機關은 調查 및 檢査業務만을 專擔하고, 工事協會는 電氣工事業의 諸行政을, 電氣協會 등에서는 自家用電氣工作物의 保安業務의 行政을 맡고, 官廳은 電氣事業의 許可, 電氣供給規程, 指定調查機關의 業務規程의 認可와 電氣事業의 長期計劃의 承認 및 電力行政의 施策, 監督權만을 行使하면 體系가 確立되는 것과 동시에 名實 共히 民間主導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産業安全技士補修教育教材(87年度), p. 104. 大韓産業安全協會
2. AMERICAN STANDARD REQUIREMENTS FOR RESIDENTIAL WIRING, 美國標準協會.
3. 電氣工事讀本, 池田榮一著, p. 1~206, 오름社
4. 電氣年鑑(88年度), p. 41, p. 49, 大韓電氣協會
5. 朝鮮日報 1988. 6. 23日字
6. 電氣法規, p. 45 石井泰安著, 森北出版社
7. 新電氣事業法(上)(下) 昔成煥著,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
8. 調查研究論文(87年度) p. 81 大韓電氣協會
9. 國家技術資格法解說 科學技術處
10. 電氣關係法規集 技多利
11. 電氣と工事 1988年 1月号 p. 29~p. 51 오름社

自動車 에너지節約

불필요한 급브레이크(급제동)를 피하십시오

○급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차의 앞으로 하중이 치우치게 되므로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연료소비량도 통상의 엔진브레이크(서서히 제동)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많아집니다.

○급제동을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운행하도록 합시다.

附錄：電氣關係諸法規 相互比較 및 改善方案 (綜合要約)

1. 電氣安全管理規程 制定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産業安全保健法	改善方案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第1條)하고,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氣工作物을 유지할 것과(第36條), 各事業體가 保安規程을 作成 제출케 되어 있음(제39條).	電氣工事의 安全하고 적정한 施工을 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한다고 목적에 제시하고(第1條), 電氣技術者의 職務로서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施工管理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第20條).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을 규정한다고 하고(第1條), 各事業體가 安全管理規程을 訂하여 當局에 제출하게 되어 있음(第43條의 3).	電氣安全에 관하여 施行規則 第170條부터 第178條까지 9個條에 걸쳐서 규정되었음.	安全에 관하여 各法規가 산발적으로 규정한 것을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現在 韓電에서 實施하고 있는 安全作業守則을 學會, 協會 등에서 인수하여 電氣安全管理規程"이라는 명칭으로 制定하고, 各法規에서는 電氣安全에 관하여는 "電氣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된다.

2. 內線規程 등의 活用 法制化

政府制定 各種 技術基準					民間制定 各種規程				改善方法
電氣設備技術基準에 관한規程	發電用火力設備技術基準令	發電用水力設備技術基準令	電氣工作物熔接技術基準令	合計	內線規程	配電規程	安全作業守則	合計	
本文 288조	本文 40조	本文 43조	本文 25조	本文 396조	本文 720	本文 166	本文 367	本文 1253	電氣事業法, 同施行令, 同施行規則만을 政府에서 關장하고 各種技術基準을 定하는 567個事項의 규치, 告示, 別表 등은 學會 또는 協會의 단체규격으로 위임하고 電氣事業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하여 法制化한다. 第36條電氣事業者는 그 보안책임하여 電氣工作物을 學會(또는 協會)에서 制定한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告示 52	告示 20	告示 17	告示 6	告示 95	부 록 41	부 록 8		부 록 49	
別表 36	別表 3			別表 39					
附表 37				附表 37					
計 413	計 63	計 60	計 31	計 567	計 761	計 174	計 367	計 1302	

3.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 一元化

調査委託의 근거	調査業務內容	現行方法	改善方法
電氣事業者는 一般用 電氣工作物이 技術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調査하여야 한다(第45條). 電氣事業者는 指定	電氣事業者는 一般用 電氣工作物을 調査한 결과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技術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調査를 設置된 때는 電氣事業者가 하고, 그 조사 후 2年마다 는 指定調査機關이 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調査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라는 뜻으로 調査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電氣工作物이 設置된 때 및 그 후 2年마다의 調査業務 全部를 指定 調査機關에 委託하여야 한다.

調査委託의 근거	調査業務內容	現行方法	改善方法
調査機關에 調査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는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第46條).	基準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第45條)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는 그 工作物이 設置된 때 및 그 조사후 2년에 1회 할 것 (규칙 제52조).		

4.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대한 定期檢查制度 마련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	自家用 電氣工作物	一般用 電氣工作物	改善方案
電氣事業用電氣工作物 중 중요한 것은 定期로 檢査를 받아야 한다(第35條). 檢査를 받아야 할 중요한 電氣工作物은 汽力發電所의 증기터어빈, 보일러, 증기저장기, 가스터어빈으로서 최고 사용압력 0 kg/cm ²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 (규칙 제43조).	第35條 내지 第38條의 규정은 自家用電氣工作物에 이를 준용한다(第51條).	電氣事業者는 一般用電氣工作物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第45條). 電氣事業者는 지정조사기관에 調査區域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는 일반용전기용작물의 調査業務를 위탁할 수 있다(第46條).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는 實質的으로 定期檢査인바 自家用의 受電設備는 波及事故로 인한 被害가 우려되므로 定期的인 檢査가 요망되고 또 現在 道知事 또는 消防署의 의뢰로 수시로 지정조사기관에서 檢査하고 있다. 이것을 施行規則 第43條의 제3호에 自家用電氣工作物중 高壓 以上の 受電設備를 追加할.

5. 電氣保安擔當者の 選任制度 개선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消防法	改善方法
專任의 保安擔當者 이외에 1000kW미만은 兼任制가 있고, 또 上限없이 保安代行制가 있다.	第18條 工事業者는 電氣技術者가 아닌 자에게 電氣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 電氣技術者는 2개이상의 事業體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2條의 11① 消防設備技士는 消防設備技士의 責任下에 施工管理를 하여야 한다. 第42條의 13② 消防設備技士는 동시에 2이상의 事業體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 保安擔當者는 專任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은 규모의 自家用 電氣工作物은 一般用 電氣工作物과 유사하므로 최대전력 300kW 미만에 한하여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兼任 또는 保安代행을 한다. 2. 300kW미만이라는 것은 1973.2.8 新電氣事業法 制定當時 에도 300kW미만에 한하여 保安代행을 허용하였고, 또 施行規則 第47條의 2에 작은 규모라는 것을 300kW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6. 電氣事業體와 自家用電氣工作物 施設業體에 計測器 등의 비치

電氣工事業體	指定調査機關	電氣事業體	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業體	改善方法
第7條 免許基準에서 工事에 必要한 시설 및 장비로서 策1種은	施行規則 第58條에서 保安契約을 하는 경우에 結연저장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技術者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一定한 計測器 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電氣事業體와 自家用電氣工作物 施設業體는 그 규모가 千差萬別이므로 一律의인 규정은 될 수 없다.

電氣事業體	指定調査機關	電氣事業體	自家用電氣工作物施設事業體	改善方法
유압식 工具 등 16종, 第2種은혹 크운메터등 8종으로 되어 있음.	등 8종류의 기구 및 시험 장치가 있어야 한다.			施行規則 第45條의 保安規程에 “9. 그 事業場에 必要한 計測器 및 工具類와 電線, 開閉器 기타의 豫備品の 保有事項”을 追加한다.

7. 非規格品 使用의 단속

電氣用品安全管理法	電氣事業法	現在の 단속방법	改善方法
<p>1. 電氣用品의 판매업자는 형식 승인 표시가 없는 것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면 아니된다(第14條).</p> <p>2. 電氣事業者, 自家用電氣工作物設置者 또는 電氣工事業者는 형식승인 표시가 없는 電氣用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第15條).</p> <p>3.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第33條).</p>	<p>1. 工事業者는 형식 승인 또는 규격표 시공이 아닌 電氣用品을 電氣工事に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第27條).</p> <p>2. 위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第48條).</p> <p>3. 第27條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第31條).</p>	<p>1. 官廳에서 판매업을 조사하여 비규격품을 수거하고 있다.</p> <p>2. 감독관청은 工事業者의 申告를 바라고 있고, 경찰은 피해자의 고발을 바라고 있다.</p>	<p>非規格品의 使用은 無免許業者가 使用하고 合法化하기 위하여 正式業者의 名의로 施工되는 것이므로 工事業者의 自律的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1. 電氣工事業法 第37條(會員의 資格) 第3項에 “會員中에서 非規格品을 使用하거나 無免許者에게 名의를 代어한 자는 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除名한다.”를 추가한다.</p> <p>2. 第31條(工事業의 免許의 取消) 第11號에 “協會에서 除名된 때”를 추가한다.</p>

8. 有資格技能士 活用の 강구

國家技術資格法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現行制度	改善方法
第10條 政府和 地方自治團體는 技術資格取得者의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적정한 維持와 그 就業 및 身分保障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强구하여야 한다.	<p>施行規則 第52條 一般用電氣工作物의 調査는 教育法에 의한 高等學校에서 電氣에 關한 學科를 이수하고 卒業한 者...</p> <p>電氣設備技術基準에 關한 規則 第57條 發電所(發電所)의 운전에 必要한 知識 및 技能을 가진 자(技術員)가 當해 發電所(發電所)의 상시감시를...</p>	技術系의 資格規定이 있고, 技能士에 대한 규정은 없음.	電氣事業法은 學校 卒業을 資格要件으로 하고, 電氣工事業法은 上位職(管理職) 만의 資格을 규정하고 實地의 施工者의 資格규정은 없음.	<p>1. 電氣事業法上의 電氣調査員과 發電所 및 變電所의 技術員은 해당분야 技能士2級 以上の 有資格者를 就業要件으로 한다.</p> <p>2. 電氣工事의 直接工事に 從事하는 자는 技能士補 以上の 有資格者라야 한다.</p>

9. 個人工事業은 技術者에게만 免許부여

國家技術資格法	電氣工事業法	改善方法
第10條 ② 政府和 地方自治團體는 技術分野에 關한 營業을 許可하거나 權利의 設定 其他 利益을 부여하는 때에는 當해 技術分野의 資格取得者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施行令 第8條 別表1 電氣技術者는 전임직으로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法人의 경우에는 任員中 1人 이상이 電氣技術者이어야 한다.	<p>工事業의 면허기준에서 技術能力을 國家技術資格法의 취지에 맞게 施行令 別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業體가 個人의 경우에는 電氣技術者이어야 하고, 法人의 경우에는 任員中 1人 이상이 電氣技術者이어야 한다.</p>

10. 電氣事業法에 協會의 設立 규정

電氣事業法	電氣工事業法	기타의 法에 의한 協會	改善 方法
協會의 設立 규정 없음	第35條(韓國電氣工事協會의 設立) 第36條(協會의 定款 등) 第37條(會員의 資格) 第38條(建議와 諮問) 第39條(類似 名稱의 使用禁止) 第40條(民法의 準用)	1.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産業安全協會 2. 消防法에 의한 消防安全協會 3.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標準協會 4.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훈련 관리공단	電氣事業法에 協會設立에 關한 事項을 定하고 細部事項은 施行規則으로 定한다.

11. 行政體制를 官廳主導에서 民間主導로 轉換

電氣事業法委託事項	電氣工事業法委託事項	改善 方法
1. 道知事に 委任한 것 24個項 2.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에게 委託한 것 6個項 3. 協會에 委託한 것 技術者의 教育에 關한 1個項	1. 道知事に 委任한 것 15個項 2. 協會에 委託한 것 第1種 工事業의 면허기재 사항 변경신고, 수급확도액의 산정, 기술자의 보수 교육 등 3個項	1. 自家用電氣工作物은 工事計劃의 認可, 工事計劃의 事前申告, 使用開始申告의 세가지로 設置가 확인되는 것을 登錄制로 一元化하고 可能한 모든 行政을 協會에 委託한다. 2. 工事業의 免許後에는 모든 行政을 協會에 委託하고 官廳은 감독에만 힘쓴다.

일본 전기설비 시찰 안내

본 협회에서는 일본국의 우수전기설비 관리업체 시찰로 국내 전기설비 운영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전기설비 관리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본 산업계의 전기설비 현황 시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시찰기간 : '89. 6. 19~ 6. 25(6박 7일)
2. 시찰대상 : 가. 우수전기설비 관리업체 (보안담당자 선임업체) 나. 전기사용합리화 우수업체 (Intelligent Bldg 포함) 다. 전기설비관리제도(보안담당업무)현황 라. 기타관련설비전학
3. 시찰인원 : 15명 (선착순)
4. 참가비용 : ₩1,200,000(인원증감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5. 참가신청
 - 가. 접수기간 : '89. 4. 1~ 4. 29(1개월)
 - 나. 접수방법 : 소정의 신청서 접수 및 예약금 24만원을 동시 수납(잔액은 출국 30일전까지 완납)
 - 다. 여권수속 : 참가신청서 구비서류 양식 배부(수속비는 본인부담)
 - 라. 접수처 : 대한전기협회 조사부 (274-1661~5)
6. 방문지 : 동경, 교토, 나라, 오사카